

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

제정 2017. 5.17. 규정 제739호

개정 2020.11.23. 규정 제82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학생·교직원의 진료 및 처치에 관한 사항
2. 학생·교직원의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
3. 학생·교직원의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
4. 단체훈련 및 부별 시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
5. 본교 시설물(건물)의 방역에 관한 사항
6.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
7. 학생 보험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보건진료소에는 소장을 두며,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소와 물리치료실을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보건소 :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와 처치, 응급처치, 학생보험 등에 관한 사무
2. 물리치료실 : 학생 및 교직원의 물리치료, 학내방역, 먹는 물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무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보건진료소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보건진료소장이 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건진료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학생·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739호, 2017. 5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, “훈련처장”은 “훈련학생처장”으로 한다.